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(안규백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034 발의연월일: 2024. 11. 29.

발 의 자: 안규백·황정아·장종태

박홍배 • 오세희 • 이개호

추미애 • 이광희 • 박범계

김기표 · 정성호 · 안태준

김준혁 • 이재관 의원

(14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「병역법」은 병역의무자가 의무복무를 마친 후 사회에 원활하게 복귀·적응하기 위한 자산을 형성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현역병 등이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하는 경우 국가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 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장병내일준비적금의 가입 대상이 현역병, 사회복무요원 등일부 군인으로 한정되어 있어 장교나 부사관 등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는 군인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금융회사 등이 국방부장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취급하는 금융 상품에 군인이 가입하는 경우 국가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의 대상을 군인 전체로 확대함으로써, 군인의 전반적인 재정 여건 을 개선하고 복무 환경을 안정적으로 만들려는 것임(안 제62조의3 신 설).

법률 제 호

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군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2조의3(금융상품의 재정지원)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회사 또는 법인이 국방부장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취급하는 금융상품에 군인이 가입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.

- 1. 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
- 2. 군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
-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금융상품의 재정지원에 관한 적용례) 제62조의3의 개정규정은 2 025년 1월 1일 이후 입영 또는 임관한 군인이 가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현 행 <신 설>	제62조의3(금융상품의 재정지원)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회사 또는 법인이 국방부 장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취급 하는 금융상품에 군인이 가입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. 1. 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2. 군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할 목적으로 설립된법인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
	<u>정한다.</u>